

# 무배당 ELS의 정석 변액저축보험 II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 확인서

무배당 ELS의 정석 변액저축보험 II의 기초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등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끝.

2022년 12월 일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선임계리사 남 효 성 (인)

# 사업방법서

## (사업방법서 별지)

###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①)ELS②)의 정석 변액저축보험 II ③)

※ 동 상품은 상품 명칭에 판매경로(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 및 계약자를 표시할 수 있는 문구를 ①), ②) 및 ③)에 삽입해 사용할 수 있음.

### 2. 보험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종신	만15세~75세	일시납	일시납

###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4.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기본보험료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하며, 500만원을 최소보험료로 한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1) 보험기간 중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한다.

추가납입보험료 총납입한도

= 기본보험료의 200% + 계약자적립액의 인출금액의 합계

※ 계약자적립액의 인출금액은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 인출금액과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의 인출금액을 포함

(2)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후, '(1)'에 따라 한도를 계산할 경우 감액 후 기본보험료와 기본보험료 감액비율과 동일비율로 감액된 추가납입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의 인출금액을 적용한다.

###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가.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15. 월대체공제액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월대체공제액'이라 한다)을 차감할 수 없어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 차감되지 않은 월대체공제액 이상의 금액을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연체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나. '가'의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부활(효력회복)이 가능하지 않거나 부활(효력회복) 후 바로 효력을 잃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위해서 추가적인 금액의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 해지계약의 계약자적립액은 계약이 해지된 날 당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며 부활(효력회복)시에는 해지된 날부터 부활(효력회복)로 인하여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평균공시이율(계약체결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말하며, 이하 '평균공시이율'이라 한다)을 연단위복리(연미만단리)로 부리한 계약자적립액과 연체보험료('가'에서 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연체보험료'라 한다) 중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해당액(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제외,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 포함) 등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하여 계약자적립액으로 한다.

라. '다'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의 이체는 '18.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의 '나. 펀드의 유형'의 '(1)'의 ② 내지 ⑦의 펀드를 선택할 수 있다.

마. '다'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은 다음과 같다.

구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부활(효력회복) 승낙 후 연체보험료(연체이자 포함)의 납입이 완료된 경우	「연체보험료 납입완료일 + 제2영업일」
연체보험료(연체이자 포함)의 납입을 완료한 후 제2영업일 이내에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연체보험료 납입완료일 + 제2영업일」
연체보험료(연체이자 포함)의 납입을 완료한 후 제2영업일이 지난 후에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 승낙일

##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시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율은 '평균공시이율 + 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한다.

## 10.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회사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1회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를 최고 한도로 한다. 다만, 보험계약 성립 전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은 제한될 수 있다.

나. '가'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 직후 계약자적립액이 기본보험료의 3%와 200만원 중 큰 금액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 '가' 및 '나' 에 따라 계약일부 10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계약일부 10년 이내의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의 합계(계약자적립액의 인출 포함)는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총 납입한 기본보험료와 총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우, 감액 후 기본보험료와 기본보험료 감액비율과 동일비율로 감액된 추가납입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의 인출금액을 적용한다.

라.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의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 가능하다. 펀드별 인출순서는 '18.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의 '나. 펀드의 유형'의 '(1)'의 ② 내지 ⑦에 해당하는 펀드의 계약자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계약자적립액이 부족한 경우 '18.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의 '나. 펀드의 유형'의 '(1)'의 ①에 해당하는 펀드의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 가능하다.

마. '가' 내지 '라'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할 경우 '인출신청일 + 제2영업일'의 당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나. 계약자는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다.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정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공시이율은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 중 회사가 정한 상품의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라.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 13. 납입보험료 처리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 해당하는 이체금액을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나. '가'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및 '이체금액'은 다음과 같다.

(1) 기본보험료

구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이체금액
청약일부 30일 이내에 승낙된 경우	청약일부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 제1회 보험료 납입일부터 「청약일부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까지는 적용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펀드의 투자수익률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
청약일부 30일이 지난 후 승낙된 경우	승낙일	

(2) 추가납입보험료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이체금액
「납입일 + 제2영업일」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일부 「납입일 + 제2영업일」까지 적용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
--	----------------

※ 다만, 추가납입보험료의 이체사유가 제1회 보험료보다 먼저 발생한 경우, 제1회 보험료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추가납입보험료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납입일부 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적용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14.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15. 월대체공제액에 관한 사항

월대체공제액은 보험기간 동안 월계약해당일에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해당월의 보험금 등을 보장하기 위한 위험보험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최저중도급부금 보증비용,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최저중도급부금 보증비용은 생활자금지급일(계약일로부터 30년 경과시점 연계약해당일) 이후에는 차감하지 않는다.

#### 16. 계약자적립액의 계산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액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17.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란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추가납입보험료 및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에 따라 월대체공제액 이상의 금액을 납입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합계를 말한다.

나. '10.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에 관한 사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인출, '23. 기타'의 '다'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 및 생활자금을 지급 경우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해당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감액 및 생활자금 지급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 인출 직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인출 직전 계약자적립액} - \text{인출금액}}{\text{인출 직전 계약자적립액}}$$

- 감액 직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 직후 계약자적립액}}{\text{감액 직전 계약자적립액}}$$

- 생활자금 지급 직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생활자금 지급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생활자금 지급 직전 계약자적립액} - \text{생활자금}}{\text{생활자금 지급 직전 계약자적립액}}$$

다. '나'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하는 경우의 '인출 직전, 감액 직전 및 생활자금 지급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라 함은 해당 인출, 감액 및 생활자금 지급이 발생 전에 인출, 감액 및 생활자금 지급이 발생한 경우 '나'의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 18.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가. 특별계정의 운용 및 평가

(1) 투자목적 및 대상에 따라 구분된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별로 운용되는 자산(이하 '펀드'라 한다)은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자산운용실적이 계약자적립액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이 계약의 운용자산을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변액보험의 유사한 성격의 운용자산 별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펀드 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 펀드통합관련사항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등록)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

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정의) 제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 공고하거나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펀드를 통합한 날 이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각 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 본점에 비치한다.

- (3) 특별계정운영보수, 특별계정투자자일임보수, 특별계정수탁보수, 특별계정사무관리보수(이하 상기 네 가지를 합한 보수를 '특별계정운용보수'라 한다)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은 특별계정과 분리하여 관리한다. 다만, 특별계정운용보수를 인하할 경우 그 시점에서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도 변경일부터 변경된 특별계정운용보수를 적용한다.

#### 나. 펀드의 유형

- (1) 펀드의 유형은 다음으로 한다.

- ① ELS30년보증형: 개별 펀드(예: 보증형 제1호, 보증형 제2호, ...)로 구분하여 별도로 운영되며, 펀드는 주가지수에 주로 연계된 ELS에 순자산(NAV)의 10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함. 다만, ELS에 투자할 수 없는 시장상황 또는 투자금액 등에 따라 ELS에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채권 및 채권형 펀드(MMF형 포함)에 투자할 수 있음. 시장하락으로 인한 펀드의 수익률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ELS의 위험을 헷지하는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며, ELS30년보증형 펀드는 ELS의 안정적인 쿠폰수익률을 추구함.
  - ② 글로벌채권형: 글로벌자산운용사가 운영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전세계 다양한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펀드임. 60~100% 이내로 전세계 채권섹터에 분산투자를 하여 장기적으로 국내 기준금리 이상의 수익률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③ 글로벌자산배분형: 글로벌자산운용사가 운영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전세계 주식과 채권, 원자재, 농수산물 등 대체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펀드임.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100% 이내로 주식 및 채권에 투자, 시장상황을 반영하고 자산별, 지역별 투자비중을 조정하여(rebalancing)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④ MMF형: 이 펀드는 채권과 양도성 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Call-loan 등 유동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⑤ 글로벌컨슈머형: 글로벌자산운용사가 운영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이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전세계 유수의 소비관련 업종과 기업에 집중투자하는 펀드임. 60~100% 이내로 주식 투자비중을 유지하여 투자하고 글로벌 소비 증대에 따른 투자수익 추구를 목표로 하고 있음.
  - ⑥ 글로벌4차산업성장형: 4차산업을 주도하는 글로벌 성장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임. 60~100% 이내로 주식 투자비중을 유지하고 4차산업 진입에 따라 AI, Robotics, 혁신기업 등 글로벌 IT, 미디어 기업 등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종목에 집중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⑦ AI글로벌주식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자산배분과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글로벌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펀드임. 100% 이내로 주식 투자비중을 유지하고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심리적인 오류나 결정장애를 방지하여 투자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 '(1)'의 ELS30년보증형 펀드는 투자 시 정해진 조건에 따라 기초자산인 KOSPI200, S&P500, HSI, HSCEI, DAX, FTSE100, NIKKEI225, EUROSTOXX50 등의 지수를 매 주기 상환평가일 마다 관찰하여 조 기상환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당해 펀드로 조기상환 되며, 그러하지 못할 경우 파생결합증권의 만기 시 상환된다. 이때, 만기 시 기초자산 관찰결과가 투자 시 정해진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ELS30년보증형 펀드가 투자한 파생결합증권이 조기상환 또는 만기상 환 되는 경우, 당해 펀드는 일반적으로 1개월 이내에 다른 파생결합증권에 다시 투자하며, 이 경우 새로이 투자된 파생결합증권의 상환조건 및 수익률 등의 투자조건은 이미 상환된 파생결합증권의 투자조건과 다를 수 있다.
- (3) ELS30년보증형 펀드가 투자한 파생결합증권이 조기(만기)상환된 이후, 해당 펀드에 계약자적립액이 투입되어있는 계약 중 생활자금지급일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인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파생결 합증권에 재투자하지 않는다.
- (4) 회사는 ELS30년보증형 펀드 각 호수 별로 투자한 파생결합증권의 상기 주요내용을 회사의 인터넷홈 페이지 등을 통하여 계약자에게 안내한다. 또한, 투자된 파생결합증권이 상환된 이후 재투자가 실행 되기 전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는 파생결합증권을 계약자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계약자는 투자 여 부를 선택할 수 있다.
- (5) '(1)'에서 운용재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1)'에서 정한 투자 한도를 초과 또는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6) 회사는 '(1)'의 ELS30년보증형 펀드에 투자한 계약자 중 일부 계약자의 파생결합증권 조기(만기)상 환 전 중도 환매로 인한 손익이 잔여 계약자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한다.
- (7) '(1)'의 투자 대상은 「보험업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운 용되고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될 수 있다.

- (8) 새로운 펀드를 추가로 설정할 경우 회사가 정한 범위 내에서 기존의 계약자에게도 동일한 펀드 선택의 기회를 부여 할 수 있다.

다.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 (1)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나'의 ELS30년보증형 펀드만 선택할 수 있다.
- (2) 계약자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나. 펀드의 유형'에서 정한 펀드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해야 하며, 선택한 펀드가 2개 이상인 경우 펀드별 투입비율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매년 12회 범위 내에서 펀드별 투입비율의 변경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선택 가능한 펀드의 개수는 최대 4개이며, 펀드별 투입비율은 5% 단위로 설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설정이 없는 경우는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투입비율에 따른다.
- (3) 추가납입보험료를 '나'의 ELS30년보증형 펀드로 납입하는 경우 파생결합증권이 조기(만기) 상환되고 파생결합증권에 재투자되기 이전 기간에 한하여 ELS30년보증형 펀드를 선택할 수 있다.
- (4)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 해당하는 이체금액은 '(1)' 또는 '(2)'에서 설정한 펀드별 투입비율에 따라 분산 투입된다.

라. 목표수익률 채권형 펀드 자동변경에 관한 사항

- (1)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목표수익률 채권형 펀드 자동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목표수익률 채권형 펀드 자동변경'을 신청한 계약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계약에 한하여 계약자적립액 전액을 '나'의 MMF형 펀드(다만, 폐지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펀드)로 자동 변경한다.
  - ① 계약일 이후 6개월이상 경과된 계약
  - ② 수익률이 계약자가 선택한 목표수익률에 도달한 계약
- (2) 목표수익률
  - ① 목표수익률의 선택: 계약자는 105% ~ 200% 중 1%단위로 하나의 목표수익률을 선택해야 한다.
  - ② 수익률의 계산

$$\text{수익률(\%)} = \frac{\text{계약자적립액}}{\text{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100$$

- (3) '(1)' 및 '(2)'에 따라 자동변경되는 계약은 「목표수익률 달성일 + 제2영업일」에 당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MMF형 펀드로 변경하여 운용하며, 자동변경된 이후 납입되는 추가납입보험료는 MMF형 펀드로 전액 투입된다.
- (4) MMF형 펀드로 자동변경 된 이후 계약자는 '다' 및 '마'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펀드 투입비율 및 계약자적립액 이전을 요청할 수 있다.
- (5) 회사는 '목표수익률 채권형 펀드 자동변경'을 연간 펀드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6)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선택한 목표수익률 도달 전에는 목표수익률의 변경, '목표수익률 채권형 펀드 자동변경' 신청의 취소 및 재신청이 가능하다. 회사는 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영업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 (7) 회사는 '목표수익률 채권형 펀드 자동변경'을 신청한 계약자에게 변경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한다.

마. 생활자금 재투자 신청 및 취소

계약자는 생활자금지급일 전일까지 생활자금 재투자를 신청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생활자금 재투자를 신청한 경우 생활자금은 지급되지 않고, 특별계정에서 계속하여 운용된다.

바. 계약자의 계약자적립액 이전

- (1)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매년 12회 범위 내에서 계약자적립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다른 펀드로의 이전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ELS30년보증형 펀드의 파생결합증권이 조기(만기) 상환되고 파생결합증권에 재투자되기 이전 기간에 한하여 ELS30년보증형 펀드로 계약자적립액 이전이 가능하다.
- (2) 회사는 '(1)'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이전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 + 제2영업일'에 당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른다.
- (3)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2)'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 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재산이 처분되는 날부터 제2영업일을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른다.
- (4) '(1)'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생활자금지급일 이후에는 ELS30년보증형 펀드로 계약자적립액 이전을 신청할 수 없다.

사. 특별계정운용보수에 관한 사항

(1) 펀드종류별 특별계정운영보수는 아래 표의 비용으로 한다.

펀드명	특별계정운영보수
ELS30 년보증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520%(매일 0.001424658%)
글로벌채권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170%(매일 0.000465753%)
글로벌자산배분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600%(매일 0.001643836%)
MMF 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100%(매일 0.000273973%)
글로벌컨슈머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500%(매일 0.001369863%)
글로벌 4 차산업성장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500%(매일 0.001369863%)
시 글로벌주식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600%(매일 0.001643836%)

(2) 펀드종류별 특별계정투자일임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아래표의 비용을 최고한도로 한다.

펀드명	특별계정투자일임보수
ELS30 년보증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300%(매일 0.000821918%)
글로벌채권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200%(매일 0.000547945%)
글로벌자산배분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00%(매일 0.001095890%)
MMF 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0%(매일 0.000027397%)
글로벌컨슈머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200%(매일 0.000547945%)
글로벌 4 차산업성장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200%(매일 0.000547945%)
시 글로벌주식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00%(매일 0.001095890%)

(3) 펀드종류별 특별계정수탁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아래표의 비용을 최고한도로 한다.

펀드명	특별계정수탁보수
ELS30 년보증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5%(매일 0.000041096%)
글로벌채권형	
글로벌자산배분형	
MMF 형	
글로벌컨슈머형	
글로벌 4 차산업성장형	
시 글로벌주식형	

(4) 펀드종류별 특별계정사무관리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아래표의 비용을 최고한도로 한다.

펀드명	특별계정사무관리보수
ELS30 년보증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017%(매일 0.000046575%)
글로벌채권형	
글로벌자산배분형	
MMF 형	
글로벌컨슈머형	
글로벌 4 차산업성장형	
시 글로벌주식형	

- (5) 특별계정이 다른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그 사실과 ‘(1)’ 내지 ‘(4)’에 정한 특별계정 운용보수 이외에 해당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함으로써 별도의 수수료(판매보수 포함)가 추가적으로 부과된다는 사실 및 그 추가수수료에 대해 안내자료 등에 기재한다.

아.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1)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2) ‘(1)’에 따른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는 특별계정별로 적용하여야 한다.

자.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에 관한 사항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좌수

특별계정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한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한다.

$$\text{좌당 기준가격} = \frac{\text{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text{특별계정의 총 좌수}}$$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운용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차. 초기투자자금

- (1) 회사는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여 특별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2) ‘(1)’에서 정한 초기투자자금의 운용은 특별계정별로 다음에 따른다.  
 ① 초기투자자금의 규모는 일반계정 총자산의 1%와 1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최고한도로 한다.  
 ② ‘(1)’에 따른 특별계정 자산이 분기 말 기준으로 초기투자자금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기투자자금을 특별계정의 기준가격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일반계정으로 상환한다.  
 ③ ‘①’ 및 ‘②’에 따른 초기투자자금의 이체 또는 상환은 현금으로 한다.

카.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에 따른 보수, 그 밖의 수수료와 동법 시행령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에 따른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및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등을 특별계정자산에서 인출하여 부담한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타. 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 (1)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계약자에게 공지한다.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③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④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2) 회사는 변액보험 판매 후 매 3개월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제공한다.

파. 특별계정의 폐지

- (1)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다.  
 ① 해당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효율적인 자산 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②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순자산)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순자산)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③ 해당 각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④ 기타 ‘(1)’ 내지 ‘(3)’에 준하는 경우  
 (2) 회사는 ‘(1)’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액과 함께 펀드별 투입비율 변경 및 계약자적립액의 이전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별 투입비율 변경 및 계약자적립액 이전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다.
- (3) 회사는 계약자가 '(2)'에 따라 펀드별 투입비율 변경 및 계약자적립액의 이전을 요구한 경우에는 연간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19.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

- 가.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 (1) 보험료 등의 납입이 있는 경우  
다만,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14. 납입보험료 처리에 관한 사항'에 따라 이체한다.
  - (2) 생활자금 재투자가 신청되어있고, 최저중도급부금 보증이 발생한 경우
  - (3)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 나.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 (1) 보험금 및 생활자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2)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는 경우
  - (3) 해약환급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4) 계약이 소멸 또는 해지된 경우
  - (5) 월계약해당일에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하는 경우(다만, 월대체공제액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 (6)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 다.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손익처리
- (1)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5영업일 이내에 하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 (2) '(1)'에 따라 이체할 때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실제 이체하는 날까지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일반계정 주주지분에서 처리한다.

## 20. 최저사망보험금에 관한 사항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 21. 최저중도급부금에 관한 사항

최저중도급부금이라 함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생활자금으로서 생활자금지급일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 22. 기타

- 가. 보험계약의 변동사항 통지  
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이후 분기별로 납입보험료 누계 및 해지시 해약환급금 등 보험계약의 변동사항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나. 기본보험료 감액에 관한 사항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다.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보험료 감액과 동일한 비율로 추가납입보험료를 감액한다.
- 다.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
- (1) 판매채널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14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정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포함한 범용(온라인채널 포함)으로 한다.
  - (2)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대한 모집수수료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계약체결비용의 99%이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라. 상품명칭에 관한 사항

회사는 상품명칭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마. 관련법규의 준용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 및 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 법규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될 경우 변동될 수 있다.

바. 계약인수에 관한 사항

보험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및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사.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제도 비교 설명

회사는 보험계약체결시 계약자에게 저축성보험의 추가납입제도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차감금액(계약관리비용)과 기본보험료의 차감금액(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보험료의 합계) 등을 비교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아. 추가납입보험료의 자동이체서비스에 관한 사항

회사는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납입보험료에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한다.

(별첨 제1호)

## 보험증권의 서식

(별첨 제2호)

## 보험계약청약서의 서식